

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

##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
제출인	상호(대표자) 유한회사정민건설 주 소 :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6길 51	사업자등록번호 : 403-81-57259
건축물	건물명(현장명) : 익산소방서 석면철거 및 해체공사 연면적( $m^2$ ) : - 석면건축자재 면적( $m^2$ ) : 1,330.45 $m^2$	위치 : 전북 익산시 무왕로 1338 (익산소방서) 작업기간 : 2018. 05. 11 ~ 2018. 06. 10.
측정기관	상호(대표자) : 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 주 소 : 전북 익산시 인북로 215 2층(남중동)	사업자등록번호 : 617-86-10498 (전화번호: 063-851-7787)
측정일시	2018년 05월 12일	
측정결과	불임 참조	
측정지점 위치 (도식도)	불임 참조	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8년 05월 일

제출인 유한회사정민건설



익산시청

첨부서류	『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』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사업장주변비산정도측정

현장명 : 익산소방서 석면 철거 및 해체공사  
비산정도 및 공기중 농도측정 용역

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전북 익산시 인북로 215 (남중동)

TEL : (063) 851-7787, 851-1502

FAX : (063) 842-3573

E-mail : [skynet1003@hanmail.net](mailto:skynet1003@hanmail.net)

# 목 차

1. 석면농도측정 결과표	2P
2.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 - 2018.05.12.	5P

## 첨 부

1.석면조사기관 지정서 사본	28P
-----------------	-----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의10서식] <개정 2011.3.3>

## 석면농도측정 결과표

### 1. 작업장 개요

측정의뢰자	현장명(공사명·작업명) : 익산소방서 석면 철거 및 해체공사 비산정도 및 공기중 농도측정 용역
	현장 소재지 : 전북 군산시 무왕로 1338 (익산소방서)
	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번호 : 익산-20180066
	의뢰자 : 익산소방서 전화번호 : 063-834-8119 대표자 : 익산소방서장

2. 측정기간 – 2018년 05월 12일

3. 측정결과 : 불임 참조

4. 측정 위치도(측정 장소) : 불임 참조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80조의12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18년 05월 일

(주)하늘석면기술연 구원



## ■ 석면비산 측정방법

### - 시료채취지점 선정 기준[개별사업장-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사업장]

연번	개별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
1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"부지경계선 지점"은 사업부지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.</li><li>"위생설비 입구 지점"은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.</li><li>"작업장 주변 실내 지점"은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을 해체·제거할 때, 동일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내의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장 주변 지점을 말한다.</li><li>"작업장 주변 실외 지점"은 사업부지 내의 개별 건축물에서 석면 해체·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.</li><li>"음압기 지점"은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0.3m~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.</li><li>"폐기물 반출구 지점"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을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주변의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.</li></ol>
2	<p>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"부지경계선 지점"은 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사업부지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.</li><li>"위생설비 입구 지점"은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.</li><li>"작업장 주변 실내 지점"은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을 해체·제거할 때, 동일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내의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장을 고려한 시료채취 지점을 말한다.</li><li>"작업장 주변 실외 지점"은 사업부지 내의 개별 건축물에서 석면 해체·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.</li><li>"음압기 지점"은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0.3m~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.</li><li>"폐기물 보관지점"은 재개발·재건축·재정비촉진 사업부지 내에 석면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경우에 임시 보관하는 곳의 주변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.</li><li>"폐기물 반출구 지점"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을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주변의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.</li><li>"거주자 주거지역"은 사업부지내 거주자가 석면 해체·제거 기간에 거주하는 경우 당일 풍향을 고려하여 가장 인접한 거주지에서 주변 2m~3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.</li></ol>

## ■ 석면비산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

연번	주 해
1	<p><b>■ 시료채취 유량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지경계선은 2,400L, 작업장 주변 및 거주자 주거지역은 1,200L를 기준으로 하되, 먼지의 영향 및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하여 유량을 조정할 수 있다.</li> <li>- 위생설비, 음압기, 폐기물 보관지점,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 시료를 채취할 있다.</li> </ul>
2	<p><b>■ 분석방법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험방법은 위상차현미경(PCM)법, 주사전자현미경(SEM)법, 투과전자현미경(TEM)법으로 한다. 다만,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모든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(TEM)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.</li> <li>- 위상차현미경법과 투과전자현미경법의 전처리 및 분석은 「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」의 ‘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(ES 02303.1)’을 따르고 주사전자현미경법은 ISO 14966을 따르며 해당 분석장비는 각 시험기준의 장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.</li> <li>- 위상차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분석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, 별도의 시료 채취 없이 분석된 필터에 남아 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투과전자현미경법에 의해 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 투과전자현미경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정성·정량 방법은 제8조에 따른다.</li> </ul>
3	<p><b>■ 분석결과 평과 및 적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상차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에서 기준인 0.01개/cc를 초과한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‘석면’을 정성·정량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, 위상차현미경법과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분석 결과를 공기 중 ‘석면’ 농도로 간주 한다.</li> </ul>

## 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	측정여부
작업중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~1.5m	-	X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~1.5m 거리 1m이내	-	○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.2~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	○
		실외	1개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~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	X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~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	○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~1.5m	-	○
	폐기물보관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~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	X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~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	X

### 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180548					분석 일시	2018. 05. 12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시간		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
			START	END	측정(분)		
-	부지경계선1	-	-	-	-	우천으로 인한 측정 불가	
-	부지경계선2	-	-	-	-	우천으로 인한 측정 불가	
-	부지경계선3	-	-	-	-	우천으로 인한 측정 불가	
-	부지경계선4	-	-	-	-	우천으로 인한 측정 불가	
A - 1	위생설비입구	08:00	08:40	40분	-	검출한계 미만	
A - 2	작업장주변(실내)	09:20	11:20	120분	-	검출한계 미만	
A - 3	음압기배출구	08:40	09:20	40분	-	검출한계 미만	
A - 4	폐기물반출구	10:00	10:40	40분	-	검출한계 미만	
-	-	-	-	-	-	-	-
-	-	-	-	-	-	-	-
분석 연구 팀장	구 지 연		분석 연구원		심 동 섭		

#### ※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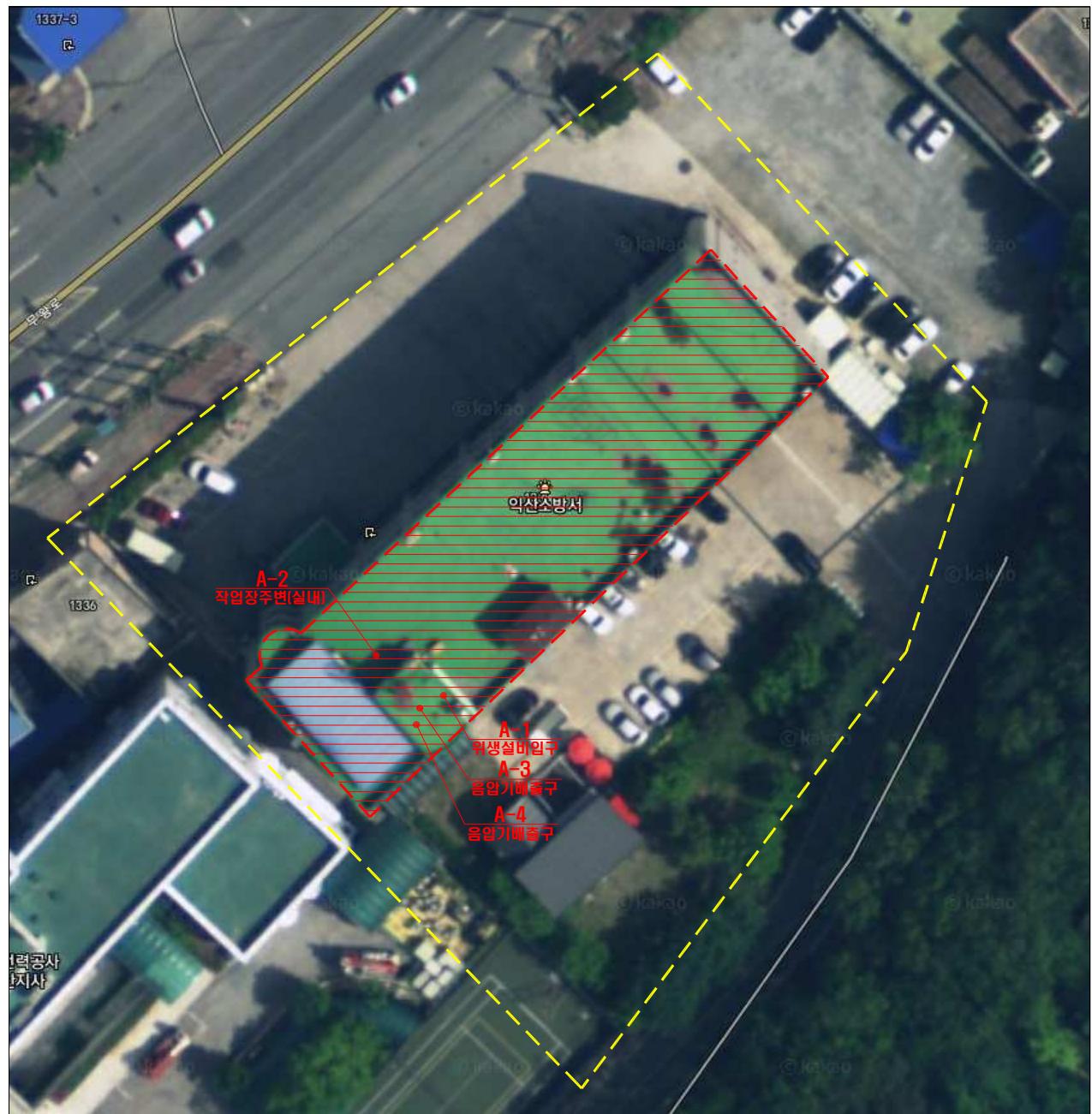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m<sup>3</sup>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 
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<sup>3</sup>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<0.002/cm<sup>3</sup> “<”는 검출한계를 뜻함.

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## ■ 석면비산 측정지점 위치도

측정지점 위치도 (2018. 05. 12)



## ■ 시료 채취사진 대장

시료 채취 사진					
시료 번호	A-1	시료 번호	A-2	시료 번호	A-3
시료채취부위	위생설비입구	시료채취부위	작업장주변(실내)	시료채취부위	음압기배출구
분석 결과	석면 0.01개/cm <sup>3</sup> 미만	분석 결과	석면 0.01개/cm <sup>3</sup> 미만	분석 결과	석면 0.01개/cm <sup>3</sup> 미만
					
시료 번호	A-4				
시료채취부위	폐기물반출구				
분석 결과	석면 0.01개/cm <sup>3</sup> 미만				
	-0 하여 백-				

## ■ 석면조사기관지정서

제2017-120004호

### 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관명	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	
소재지	(54620)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15 2층()	
대표자성명	구지연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할지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광주청

#### \* 준수사항

-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7. 3. 14

